

# 원규공개관리규칙

[제정 2011. 10. 7]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이라 한다)의 조직·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정·보유·관리하는 원규에 대한 공개 대상 및 범위 등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참여를 통해 진흥원이 수행하는 업무처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원규”라 함은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라목의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정하는 정관 등 내부규정을 말한다.
2. “공개”라 함은 원규를 국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하여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.
3. “공직유관단체”라 함은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라목이 준용하는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제1항제12호, 제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.

**제3조(원규 공개의 원칙)** 진흥원이 제정·보유·관리하는 원규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

**제4조(비공개대상 원규)** 진흥원이 제정·보유·관리하는 원규 중 원규공개심의회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심의·의결한 원규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경영·영업상 비밀 및 보안에 관한 규정으로서 공개될 경우 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규
2. 감독·검사·심사·평가 관련 규정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원규

**제5조(부분공개대상 원규)** 진흥원에서 제정·보유·관리하는 원규 중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정과 공개가 가능한 규정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두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원규 공개 관련 부패영향평가)** 원장은 원규 공개 관련 공개 대상 여부, 공개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개 관련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.

**제7조(원규공개심의회)** ① 진흥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원규 비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규공개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  
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 
③ 심의회 위원장은 경영기획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 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, 그 중 과반수 이상은 사업수행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.  
④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구체적으로 정한다.

**제8조(원규의 공개 대상 관리)** ① 원장은 일반국민이 원규를 원활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
## 부 칙(2011. 10. 7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칙은 2011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.